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시 고려사항 규정〉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817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2.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4
3. 검토의견	7
4. 관계기관의 의견	10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5. 4. 15.
3. 회부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경우¹⁾ 관계인의 의사·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²⁾인 경우 ①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특

1)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62조의2(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사·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u> <u>1.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5항</u>

현행	개정안
	<u>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u> <u>2.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u>

2.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등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위의 처분을 할 때 제67조제1항³⁾에 따른 제재(1

3)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사전처분은 구체적인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그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본안사건 종료 전에 적절한 잠정적 처분을 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확보를 위한 「가사소송법」 상의 특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음⁴⁾.

「가사소송법」 상 사전처분을 「민사집행법」 상 보전처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전처분은 현상유지적 소극 처분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집행력이 있는 데 비해,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적극적 처분을 함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작위의무를 부여하는 소극적 처분뿐만 아니라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처분도 가능하며, 집행력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위반 시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10, p.266; 박동섭, 가사소송 실무[上], 법률문화원, 2009. p.141.

＜ 사전처분과 보전처분과의 비교 ＞

구분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
신청·발령 시	본안제기 후에만 가능 사건종료 전에 한함	본안제기 전·후 불문
직권·신청	직권으로도 발령 가능	‘신청’에 따라서만 발령
본안 사건	가사소송·비송사건 조정신청사건	가사소송·마류 가사비송사건 (“라”류 사건은 보전처분 불허)
발령대상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본안사건의 상대방
불복방법	즉시항고뿐	이의신청 기타 절차
본안법원 등	본안법원=처분법원=집행법원 (관할법원)	본안법원·가처분법원·집행법원이 구 별됨
집행력	없음(다만, 과태료에 의한 간접강 제가 가능)	집행력이 있음
손해담보	담보공탁이 없음	담보공탁이 있음
내용	소극적 처분과 적극적 처분(관계인 의 감호·양육 기타 적당한 처분)	소극적 처분(처분금지 등)이 주된 내용
취소·변경	직권으로도 가능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자료: 박동섭, 가사소송 실무[上], 법률문화원, 2009, p.142.

사전처분의 형태는 크게 ①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②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③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④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사전처분의 유형별 사례 ＞

유형	구체적인 사건 예시
현상의 변경·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마류 1호 사건), 재산관리자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마류 2호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거나 현

	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후견인의 변경(라류 18호 사건) 및 유언집행자의 해임(라류 47호 사건) 등의 사건에서 현상유지를 위하여 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해임이 청구된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부부재산의 분할(마류 4호 사건) 및 상속재산의 분할(마류 10호 사건) 등의 사건에서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기여분의 결정(마류 9호 사건) 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성년후견개시심판사건(라류 1호 사건)에서 청구인 또는 후견인으로 될 자로 하여금 미리 사건본인을 정신병원 등에 감금요양하도록 명하는 것, 친권상실신고사건(마류 7호 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규칙 제102조), <u>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u> (마류 3호 사건) 및 부양에 관한 사건(마류 8호 사건)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성년후견개시심판사건(라류 1호 사건)에서 재산관리임을 선임하여 사건본인의 재산상의 행위에 그 재산관리인의 후견 내지 보조를 받도록 하는 것

자료: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I], 2010, pp.266~267 내용을 재구성.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경우, 관계인의 의사·연령 등을 참작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① 사전처분을 통해 같은 법에 따른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이하 “관계인 안전사항”이라 함)를 특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인용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실제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 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져 피해 자녀의 불안과 위협을 가중한 사례⁵⁾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법원 등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기 전에 관계인 안전사항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

5) 허민숙,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p.19.

로써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관계인 등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관계기관의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되, 범행이 중하여 가정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당사자 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부터의 보호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관련 사례 발췌>

- 2018년 10월 OO가정법원은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피해부모와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 결정함.
 - 해당 아동의 야뇨 증세 및 불안 증세가 악화되었으며, 가해자가 자녀에게 보호시설의 위치와 어린이집 이름을 물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함.
- 2018년 5월 OO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피해모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경찰이 동행하여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이를 보자마자 유모차를 빼앗아 끌고 가려하였으며, 경찰에게 피해자의 거주 장소를 집요하게 물어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됨.
- 2018년 9월 OO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 중인 피해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피해자가 3세 딸을 동반하여 가해 배우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가 가해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호소하며 두려워 함.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와 미성년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이혼가정 등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두텁게 보호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